



1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2 박용만 회장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보완의견’ 국회에 건의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정기국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재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지난 9월 14일 국회에 제출한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않아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큰 만큼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을 위해

지난 6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 '생산 및 주요 업무 시설에 한해 이를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규정 삭제 ▲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이다. 대한상의는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을 강화했지만, 기업의 방어권은 부족하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시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을 유지하는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도 선진국처럼 삭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은 ‘기업별 노조로 해고자·실업자사업장 출입 금지해야”

A 기업 노무 부서장은 “해고자나 실업자인 노동운동가에게 노조 문이 열리면 복직 요구나 정치적 이슈 등 예상치 못한 사안들이 노사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외부인의 회사 출입이 자유로워져 기밀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불가피하게 허용하더라도 사업장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제한된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

하면서 노조 대의원·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인정하면서 사업장 내부규칙 또는 노사가 합의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의는 기업별 노조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노사 간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은 물론 정부도 보안과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자·실업자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선진국서 ‘직장점거’는 위법...사업장 점거 파업 전면 금지해야”

B 기업 인사·노무 임원은 “교섭이 결렬되면 사업장부터 불법 점거하는 행태가 여전하고 대체 근로마저 불가능해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없다”며 “결국 회사는 버티지 못하고 파업 기간에 임금을 보전해주고 고소를 취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직장점거 파업에 대해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 선진국에서는 직장점거가 위법행위로 취급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생산 시설과 주요 업무 관련 시설 점거만 금지돼 사실상 직장점거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게 상의의 측 주장이다. 상의는 “주요국에서 파업은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일 뿐 사업장을 점거해 생산을 방해하면 위법”이라며 “사업장 내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권만을 강화하고 있어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과 산업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 대등성과 노동시장 경쟁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⑤